

## 강원도립대학교 부설 연구소 설치 및 운영규정

(제정) 1998-05-12 규정 제015호

(개정) 2000-10-19 규정 제085호
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부설 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.)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4.25.>

제2조(연구소의 설치) 연구소는 기존의 학내조직으로 담당할 수 없는 학문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거나, 교외의 재정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대학의 학술연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.

제3조(설치신청)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교학처에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연구소 설치사유서 (설치의 목적, 필요성 및 기대효과 포함)
2. 연구소 설치 발기인 명부 (발기인 5인 이상)
3. 연구소 자체운영 규정(안)
4. 연구진 및 기구표
5. 연구수행 예정계획서 (향후 2년간)
6. 연구소 운영재원 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

제4조(설치승인) 연구소의 신설은 설치 신청서에 대한 관련부서와의 협의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.

제5조(연구소의 조직과 임원선임) ①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, 또는 기타의 기구를 둘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 규정으로 정한다.

③ 간사는 소속연구소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
④ 연구소의 사무처리와 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⑤ 연구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연구원 등) ① 연구소에 약간명의 연구원을 두며,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연구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연구원, 특별연구원 및 자문위원의 위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소 운영 규정에 의한다.

제7조(연구소의 지휘감독) ① 총장은 연구소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휘·감독한다.

1. 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장기발전계획
2. 연구소의 조직 및 시설 운영사항
3. 연구소의 재정 및 연구비 운영상태
4. 외부 연구용역 사업

5. 기타 연구소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연구소장은 전항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지원 부서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총장은 제1항 제4호의 사업이 소속 연구원 본연의 직무인 교수, 연구, 학생지도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용역사업에 대한 연구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8조(연구소의 지원) 총장은 부속 또는 부설연구소의 원활한 운영과 학술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학술연구비

2. 운영비, 학술행사 및 연구지 발간경비, 특정목적 사업비 등으로 소요되는 보조금

3. 연구원, 조교, 사무직원, 기능직의 연구인력

4. 실험실습 기자재 등 연구시설

5. 기타 연구소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9조(연구소 평가) 총장은 연구소의 활동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연구소에 대한 지원, 연구소 정비, 기타 연구소 발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0조(규정제정 및 개정) 신설 연구소의 규정을 제정하거나, 기존 연구소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

제11조(재정)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.

②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자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각종 연구비는 대학 연구 지원부서에서 중앙관리 하되, 별도 계정으로 운영한다.

제12조(사후관리) ①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연구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통·폐합을 포함한 행·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각 연구소간의 설치 목적과 사업 등이 매우 유사한 경우

2. 연구소 본래의 설치목적과 사업목적에 크게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

3. 연구 실적이 부실하거나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

4. 우리 대학의 명예를 실추하였거나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

5. 기타 특별히 통·폐합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연구소의 통·폐합은 제4조에서 정한 절차를 적용한다.

제13조(보고의무)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신학년도 사업계획서를 전 학년도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전 학년도 사업결과 보고서를 신학년도 초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3. 연구소는 자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설치된 연구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되, 앞으로 새로이 구성되는 연구소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(2016. 4. 25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